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98
----------	-------

발의연월일 : 2019. 5. 30.

발의자 : 조승래 · 이상현 · 박홍근

정세균 · 김병기 · 이석현

이동섭 · 이찬열 · 이규희

이후삼 · 신창현 · 손금주

김철민 · 설훈 · 노옹래

박찬대 · 신경민 · 박경미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0일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2019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법의 효력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 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19년</u> <u>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 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2024년</u> <u>12월 31일</u> -----.